협동조합 업무지침 신구 대비표

(설립지원팀, 22년 02월)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목차	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379	목차	10. 공익법인등 지정·····382
p.15	법 제·개정 경과 •「협동조합기본법」일부 개정('20.3.31.) <추가>	p.14	법 제·개정 경과 •「협동조합기본법」일부 개정('20.3.31.) •「협동조합기본법」일부 개정('21.1.5.)
p.16.	<추가>	p.16	참고 1「협동조합 기본법」일부 주요 개정('21.1.5.) 내용 임원 결격사유 삭제 •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삭제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운동 시 호별 방문 등의 제한 기간을 법정화 •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
p.16	참고 1「협동조합 기본법」일부 주요 개정('20.3.31.) 내용 <생략> 임원 결격사유 추가 <추가> • 업무상 위력 등에 ~ 추가	p.17	참고 2「협동조합 기본법」일부 주요 개정('20.3.31.) 내용 <현행과 같음> 임원 결격사유 추가 •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한정 • 업무상 위력 등에 ~ 추가
p.24	참고 1「협동조합」과「회사」의 차이	p.25	참고 1「협동조합」과「회사」의 차이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
<table>
<tr><td></td><td>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td></tr>
<tr><td>사업</td><td>• 아래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일반)
- <생략></td></tr>
<tr><td>운영의 공개</td><td>• 경영공시자료 게재(사회적협동조합)</td></tr>
<tr><td>적립금</td><td>•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법정적립금으로 적립</td></tr>
<tr><td>배당</td><td>• 이용실적 ~ 함
• 납입출자액 ~ 안됨</td></tr>
<tr><td>자금조달 금융사업</td><td>•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출자금 한도내에서)</td></tr>
<tr><td>출자방식</td><td>• 조합원의 출자, 우선출자</td></tr>
</table>
</td><td></td><td>
<table>
<tr><td></td><td>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td></tr>
<tr><td>사업</td><td>• 아래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
- <현행과 같음></td></tr>
<tr><td>운영의 공개</td><td>• 경영공시자료 게재(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 수 또는 출자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td></tr>
<tr><td>적립금</td><td>•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분의 30이상 적립</td></tr>
<tr><td>배당</td><td>• 이용실적 ~ 함
• 납입출자액 ~ 안됨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불가</td></tr>
<tr><td>자금조달 금융사업</td><td>•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한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td></tr>
<tr><td>출자방식</td><td>• 조합원의 출자
• 우선출자 발행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협동조합만 우선출자 발행 가능</td></tr>
</table>
</td></tr>
<tr><td>p.26</td><td>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table>
<tr><td></td><td>(일반)협동조합</td><td>사회적협동조합</td></tr>
<tr><td>사업</td><td>•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td><td>•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td></tr>
</table>
</td><td>p.27</td><td>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table>
<tr><td></td><td>(일반)협동조합</td><td>사회적협동조합</td></tr>
<tr><td>사업</td><td>•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td><td>•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 따른 주(主) 사업 40% 이상 수행 의무</td></tr>
</table>
</td></tr>
<tr><td>p.27</td><td>03. 협동조합 업무체계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청산 사무의 감독, 해산등기 촉탁,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td><td>p.28</td><td>03. 협동조합 업무체계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청산 사무의 감독, 조직변경 인가, 해산등기 촉탁,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지방자치단체
• 주된 사무소의 ~ 신고수리, 벌칙・과태료 부과</td><td></td><td>지방자치단체
• 주된 사무소의 ~ 신고수리, 감독, 벌칙・과태료 부과</td></tr>
<tr><td>p.52</td><td>자금지원(법 제10조제2항)
• 국가 및 공공단체는 ~ 자금지원 가능</td><td>p.54</td><td>자금 등 지원(법 제10조제2항)
• 국가 및 공공단체는 ~ 자금 등 지원 가능</td></tr>
<tr><td>p.56</td><td>※ 상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table><tr><th colspan="2">'상법 제1편 총칙'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h></tr><tr><td>제4조</td><td>자기명의 ~ 협동조합등이라 함</td></tr><tr><td>제21조</td><td>동일한 ~ 사용, 지점의 ~ 표시</td></tr><tr><td>제23조</td><td>① 부정한 목적으로 ~ 금지</td></tr><tr><td>제23조</td><td>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 ~ 청구 가능</td></tr><tr><td>제29조</td><td>협동조합등은 영업상의 ~ 대차대조표 작성</td></tr><tr><td>제33조</td><td>협동조합등은 10년간 ~ 보존
다만, 전표 또는 ~ 5년간 보존</td></tr><tr><td>제37조</td><td>등기할 사항을 ~ 못함</td></tr></table>
<table><tr><th colspan="2">'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는 주요사항</th></tr><tr><td>제287조의7</td><td>조합원등의 책임은 ~ 한도로 함</td></tr><tr><td>제287조의32</td><td>협동조합등의 회계는 ~ 회계관행에 따름</td></tr></table></td><td>p.58</td><td>※ 상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table><tr><th colspan="2">'상법 제1편 총칙'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h></tr><tr><td>제4조</td><td>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함</td></tr><tr><td>제21조</td><td>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함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함</td></tr><tr><td>제23조</td><td>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함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td></tr><tr><td>제29조</td><td>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함</td></tr><tr><td>제33조</td><td>상인은 10년간 ~ 보존
다만, 전표 또는 ~ 5년간 보존</td></tr><tr><td>제37조</td><td>등기할 사항은 ~ 대항하지 못함</td></tr></table>
<table><tr><th colspan="2">'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는 주요사항</th></tr><tr><td>제287조의7</td><td>사원의 책임은 ~ 한도로 함</td></tr><tr><td>제287조의32</td><td>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 회계관행에 따름</td></tr></table></td></tr>
<tr><td>p.60</td><td>설립현황
•'19.12월말 기준 (일반)협동조합은 15,052개가</td><td>p.62</td><td>설립현황
•'20.12월말 기준 (일반)협동조합은 16,823개가 신고수리되어</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신고수리되어 전체 협동조합(16,895개) 중 약 89.2%를 차지		전체 협동조합(19,388개) 중 약 86.7%를 차지
p.65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발기인대표로부터 ~ 납입하게 함(법 제18조제2항)	p.67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발기인으로부터 ~ 납입하게 함(법 제18조제2항)
p.66	11. 사업자 등록 • 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p.68	11. 사업자 등록 • 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 가능
p.68 p.175 p.262 p.397 p.489	[참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추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신고 관련 : 기획재정부, 주사무소 관할 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p.70 p.177 p.264 p.401 p.493	[참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 임원 명부 작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신고 관련 : 기획재정부, 주사무소 관할 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추가>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 임원 등의 결격사유 관련 : 경찰청(전국경찰관서)
p.73	5. 임원명부 • 서식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p.75	5. 임원명부 • 서식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약력 포함
p.73 p.180 p.267 p.402 p.494	5. 임원명부 • 주요 확인사항 -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의 서식 활용	p.75 p.182 p.269 p.406 p.498	5. 임원명부 • 주요 확인사항 - <삭제> ※ <삭제>
p.75 p.182 p.272 p.405 p.497	상법 제186조-제193조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생략>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 협동조합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2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p.77 p.184 p.274 p.409 p.501	상법 제186조-제193조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현행과 같음>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 아니한다.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판결확정전에 생긴 협동조합과 조합원 및 제3자 간의 ~ 아니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 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 <생략>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중략)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이하 생략)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 <현행과 같음>
p.76	• 중요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기타 사항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경영공시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p.78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변경등기 기간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
p.80 p.275	조합원의 가입 • (법인)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가능	p.82 p.277	조합원의 가입 • (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가능
p.8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 없다. 1. ~ 4. <생략> <추가>	p.8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p.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 못한다. <추가>	p.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 못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p.85	당연탈퇴 사유 • "당연탈퇴"란 ~ , 다음 사유로 탈퇴 <생략>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연탈퇴	p.87	당연탈퇴 사유 • "당연탈퇴"란 ~ , 다음 사유로 탈퇴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88 p.284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 통지	p.95 p.287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 통지
p.93 p.199 p.289 p.418	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생략> 1. <생략> 2. 피한정후견인	p.95 p.201 p.292 p.422	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2021. 1. 5.>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511	3. ~ 7. <생략> ② ~ ③ <생략>	p.516	3.~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p.94 p.200 p.290 p.420 p.513	•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 수행해야함	p.96 p.202 p.293 p.423 p.517	•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법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 수행해야함
p.95 p.291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 - 이사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	p.97 p.294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
p.99 p.204 p.295 p.424 p.517	라. 선거운동의 제한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생략>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 ④ <생략>	p.101 p.206 p.298 p.428 p.521	라. 선거운동의 제한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p.100 p.205 p.296 p.425 p.518	-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모이게 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대의원이 ~ 처함(법 제117조제3항)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 위헌결정(2018헌가12)을 받았음	p.102 p.207 p.299 p.429 p.522	-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모이게 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대의원이 ~ 처함(법 제117조제3항) - <삭제>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 따라서 정관에는 ~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td><td></td><td>※ <삭제></td></tr>
<tr><td>p.101</td><td>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 타당하게 시행
• 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이 불가능 ~ 우선 확인</td><td>p.103</td><td>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 타당하게 시행
※ 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이 불가능 ~ 우선 확인</td></tr>
<tr><td>p.102
p.207
p.308
p.427</td><td>•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 '참고'에 적시되어 있음
<추가></td><td>p.104
p.209
p.311
p.431</td><td>•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 '참고'에 적시되어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업종별 상세 내용 확인 필요</td></tr>
<tr><td>p.112</td><td>• 자율경경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고려해 시.도 사업 등 참여 시 정책적 지원 권고</td><td>p.114</td><td>•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시.도 사업 등 참여 시 우대를 고려할 수 있음</td></tr>
<tr><td>p.115
p.224
p.328
p.445
p.541</td><td>참고 1 회계기준
<table><tr><td>장부</td><td>지출증빙 서류 수취 및 보관</td><td>공급받는 재화 또는 ~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td></tr></table></td><td>p.117
p.226
p.331
p.449
p.545</td><td>참고 1 회계기준</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장부 | 지출증빙 서류 수취 및 보관 | 공급받는 재화 또는 ~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p.11외* * p.119, 124, 131, 132, 228, 233, 332, 333, 338, 341, 346, 448, 449, 453, 454	절차도 內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최고 (p.132, 234, 347, 454)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p.120외* *p.121, p.126,p.133, p.134,p.229, p.235,p.335, p.336,p.341, p.344,p.350, p.452,p.453, p.457, p.458	절차도 內 대차대조표 작성,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및 개별최고
p.120	⑤ 신고(법 제56조 제2항)	p.122	⑤ 신고(법 제56조 제2항, 제4항)
p.120	⑥ 신고수리여부 통지(법 제56조제5항) - 신고수리 여부 ~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p.122	⑥ 신고수리여부 통지(법 제56조제5항) - 신고수리 여부 ~ 그 기간(연장.재연장 기간 포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p.121	⑦ 합병등기(법 제65조) - 합병신고를 수리(신고수리 간주일 포함)한 날부터 ~ 등기	p.123	⑦ 합병등기(법 제65조) -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수리 간주일 포함)부터 ~ 등기
p.124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p.125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
<table>
<tr><th colspan="2">소멸회사</th></tr>
<tr><td>총회
의결</td><td>• (존속 협동조합) 총 조합원 ~ 이상의 찬성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출석, 출석주주 2/3이상의 찬성
• (소멸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총사원 반수 이상, 총사원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
• (소멸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동의</td></tr>
</table>
</td><td></td><td>
<table>
<tr><th colspan="2">소멸회사</th></tr>
<tr><td>총회
의결</td><td>• (존속 협동조합) 총 조합원 ~ 이상의 찬성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 (소멸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결의
• (소멸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동의</td></tr>
</table>
</td></tr>
<tr><td>p.124
p.338</td><td>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table>
<tr><th colspan="2">소멸회사</th></tr>
<tr><td>해산
등기</td><td>• (소멸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 후 지점 소재지에 2주 이내</td></tr>
</table>
</td><td>p.126
p.341</td><td>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table>
<tr><th colspan="2">소멸회사</th></tr>
<tr><td>해산
등기</td><td>• (소멸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 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td></tr>
</table>
</td></tr>
<tr><td>p.125
p.339</td><td>④ 총회
<table>
<tr><th colspan="2">소멸회사</th></tr>
<tr><th>주식회사</th><th>유한회사</th></tr>
<tr><td>- 출석주주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이어야 함)</td><td>-총사원 1/2 이상, 총사원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td></tr>
</table>
</td><td>p.127
p.342</td><td>④ 총회
<table>
<tr><th colspan="2">소멸회사</th></tr>
<tr><th>주식회사</th><th>유한회사</th></tr>
<tr><td>-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td><td>-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결의</td></tr>
</table>
</td></tr>
<tr><td>p.126
p.339</td><td>·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상법 제434조)
- (소멸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
· 총사원의 반수 이상, 총사원의 의결권의 3/4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상법 제598조. 제585조)</td><td>p.128
p.342</td><td>·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상법 제434조)
- (소멸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
· 총 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결의(상법 제598조. 제585조)</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127</td><td>⑦ 인가 여부 통지(시행령 제13조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td><td>p.129</td><td>⑦ 인가 여부 통지(법 제56조 제8항, 제9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td></tr>
<tr><td>p.127</td><td>⑧ ~ ⑨ <생략>
⑩ 변경·해산 등기
<table><tr><th>유형</th><th>등기의 종류</th><th>등기기한</th></tr><tr><td>소멸하는 회사</td><td>해산등기</td><td>(유한책임회사)
- 합병 후 지점소재지에 2주 이내</td></tr></table></td><td>p.129</td><td>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변경·해산 등기
<table><tr><th>유형</th><th>등기의 종류</th><th>등기기한</th></tr><tr><td>소멸하는 회사</td><td>해산등기</td><td>(유한책임회사)
- 합병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td></tr></table></td></tr>
<tr><td>p.132</td><td>· 존속분할 절차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최고</td><td>p.134</td><td>· 존속분할 절차
⬇
대차대조표 작성,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최고</td></tr>
<tr><td>p.133</td><td>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 공고(법 ~ 제54조)
<생략>
- 협동조합은 총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공고하거나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td><td>p.135</td><td>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 공고(법 ~ 제54조)
<현행과 같음>
- 협동조합은 총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 공고하고,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td></tr>
<tr><td>p.139
p.355</td><td>④ 해산간주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td><td>p.141
p.358</td><td>④ 해산간주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140
p.240
p.356
p.461
p.549</td><td>
<table>
<tr><td colspan="2">「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d></tr>
<tr><td>제88조</td><td>① 청산인의 ~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② 전항의 공고에는 ~ 재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함</td></tr>
<tr><td>제91조</td><td>청산중의 법인은 ~ 변제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 의하여 변제</td></tr>
<tr><td>제93조</td><td>① 청산 중 ~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 임무 종료</td></tr>
<tr><td colspan="2">「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d></tr>
<tr><td>제121조</td><td>다음 각 호의 어느 ~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td></tr>
</table>
</td><td>p.142
p.242
p.359
p.465
p.553</td><td>
<table>
<tr><td colspan="2">「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d></tr>
<tr><td>제88조</td><td>청산인의 ~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채권신고 공고에는 ~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함</td></tr>
<tr><td>제91조</td><td>청산중의 법인은 ~ 변제가능
이 경우 조건있는 채권, ~ 의하여 변제</td></tr>
<tr><td>제93조</td><td>청산 중 ~ 이를 공고
청산인은 ~ 임무 종료</td></tr>
<tr><td colspan="2">「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d></tr>
<tr><td>제121조</td><td>다음 각 호의 어느 ~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td></tr>
</table>
</td></tr>
<tr><td>p.142
p.359</td><td>조직변경 절차
<table><tr><td>채권자보호절차</td></tr><tr><td>채권자에 대해 이의신청 공고(30일이상)</td></tr></table></td><td>p.144
p.362</td><td>조직변경 절차
<table><tr><td>채권자보호절차</td></tr><tr><td>채권자에 대해 이의신청 공고(1월 이상)</td></tr></table></td></tr>
<tr><td>p.143</td><td>- (사내유보금)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 있음</td><td>p.145</td><td>- (사내유보금)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 있음</td></tr>
<tr><td>p.143</td><td>②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
- 조직변경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 일정한 기간(30일 이상)에 ~ 신청하여야 할 것을 ~ 최고하여야 함</td><td>p.145</td><td>②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삭제>

- 조직변경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에 ~ 신청하여야 할 것을 ~ 최고하여야 함</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td><td></td><td></td></tr>
<tr><td>p.143</td><td>④ 조직변경신고일로부터 ~ 발급
- 시·도지사는 ~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수리 ~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 것으로 봄</td><td>p.145</td><td>④ 조직변경신고일로부터 ~ 발급
- 시·도지사는 ~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 것으로 봄</td></tr>
<tr><td>p.143</td><td>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날(신고서를 요하는 경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 설립등기</td><td>p.145</td><td>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 설립등기</td></tr>
<tr><td>p.147</td><td>•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류<table><tr><th>구분</th><th>신청서류</th></tr><tr><td>3</td><td>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에 따라 ~ 서류</td></tr></table></td><td>p.149</td><td>•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류<table><tr><th>구분</th><th>신청서류</th></tr><tr><td>3</td><td>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에 따라 ~ 서류</td></tr></table></td></tr>
<tr><td>p.150</td><td>•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 등기</td><td>p.152</td><td>•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 등기</td></tr>
<tr><td>p.152</td><td>자. 조직변경등기
법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 하여야 한다.</td><td>p.154</td><td>자. 조직변경등기
법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 하여야 한다.</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154</td><td>•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날부터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또는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td><td>p.154</td><td>•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td></tr>
<tr><td>p.153</td><td>등기의 기산일
• 등기 사항으로서 ~ 계산(법 제109조)</td><td>p.155</td><td><삭제></td></tr>
<tr><td>p.154</td><td>협동조합 등기 관련 준용사항
<table><tr><th colspan="2">「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h></tr><tr><td>제121조</td><td>다음 각 호의 어느 ~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td></tr></table></td><td>p.156</td><td>협동조합 등기 관련 준용사항
<table><tr><th colspan="2">「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h></tr><tr><td>제121조</td><td>다음 각 호의 어느 ~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td></tr></table></td></tr>
<tr><td>p.155</td><td>필요한 조치
• 시.도지사는 협동조합이 ~ 시정명령,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td><td>p.157</td><td>필요한 조치
• 시.도지사는 협동조합이 ~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td></tr>
<tr><td>p.156</td><td>•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하였거나, 협동조합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설립 취소도 가능함

- 설립 취소할 경우 비교형량을 하되 i) 청문 ii)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추가></td><td>p.158</td><td>•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하였거나, 협동조합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설립 취소도 가능함

- 설립 취소할 경우 비교형량을 하되 i) 청문 ii)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본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2조·제27조부터 제37조</td></tr>
<tr><td>p.157</td><td>시행령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생략>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 제1항제2호의 자기총자본에서 ~ 말한다.</td><td>p.159</td><td>시행령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 말한다.</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168	특징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 ,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회재정부장관의 ~ 가능	p.170	특징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 , 상담·교육·훈련,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회재정부장관의 ~ 가능
p.168	설립현황 •'19.12월말 기준 76개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신고수리되어 설립	p.170	설립현황 • '20.12월말 기준 83개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신고수리되어 설립
p.173	- 민원 처리에 관한 ~ 산입하지 아니함 • 설립인가증 발급~ 않음(민원처리에 ~ 제20조)	p.175	- 민원 처리에 관한 ~ 산입하지 아니함 • 신고확인증 발급~ 않음(민원처리에 ~ 제20조)
p.173	9. 출자금 납입 • 회장이 ~ 납입하게 함(법 제18조 제2항 준용) - 회장 명의의 ~ 제출(설립신고서상 ~ 함) - 현물출자자는 ~ 연합회에 제출 <추가>	p.175	9. 출자금 납입 • 회장이 ~ 납입하게 함(법 제18조 제2항 준용) - 회장 명의의 ~ 제출(설립신고서상 ~ 함) - 현물출자자는 ~ 협동조합연합회에 제출 - 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p.174	11. 사업자 등록 •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p.176	11. 사업자 등록 •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 가능
p.178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p.180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 주요 확인사항 - 필수 ~ 함 - 창립총회 ~ 함(공고 ~ 포함하지 않음) <추가> - 공고문을 ~ 확인		• 주요 확인사항 - 필수 ~ 함 - 창립총회 ~ 함(공고 ~ 포함하지 않음) -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였는지 확인 - 공고문을 ~ 확인
p.183	법 제71조(설립신고 등) 및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추가>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p.185	법 제71조(설립신고 등) 및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p.183	기본방침 • 중요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기타 사항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p.185	기본방침 ※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84조에 의해 준용하는 제64조에 따른 변경등기 기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변경 신고
p.187	가. 자격 및 가입 법 제73조(회원의 자격)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 한다. ② 연합회는 ~ 있다. <추가>	p.189	가. 자격 및 가입 자격 및 가입 관련 법령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 한다. ② 연합회는 ~ 있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p.187	회원의 가입 • 기본법에 의해 ~ 가능 - 자연인, 기본법 외에 개별법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종협동종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	p.189	회원의 가입 • 기본법에 의해 ~ 가능 - <삭제>
p.190	당연탈퇴 사유 • "당연탈퇴"란 ~ , 다음 사유로 탈퇴 <중략>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연탈퇴	p.192	당연탈퇴 사유 • "당연탈퇴"란 ~ , 다음 사유로 탈퇴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194 p.196	- 회장은 총회 개최 ~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 통지	p.196 p.198	- 회장은 총회 개최 ~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 통지
p.200	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준용 제40조(임원의 해임) <생략>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는 ~ 제2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p.202	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준용 제40조(임원의 해임) <생략>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는 ~ 제2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p.203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 - 회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	p.203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202</td><td>임원의 겸직 관련 준용 법령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생략>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 ~~~~ 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생략></td><td>p.204</td><td>임원의 겸직 관련 준용 법령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 ~~~~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td></tr>
<tr><td>p.209</td><td>•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공제사업은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 이용 불가</td><td>p.211</td><td>•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공제사업은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으로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 이용 불가</td></tr>
<tr><td>p.211
p.431
p.525</td><td>③ 인가여부결정 및 통보
- 기획개정부장관은 ~~~ 서면으로 통보(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td><td>p.213
p.434
p.529</td><td>③ 인가여부결정 및 통보
- 기획개정부장관은 ~~~ 서면으로 통보</td></tr>
<tr><td>p.218</td><td>※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법정자본금</td><td>회사에 ~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 간주</td></tr></table></td><td>p.220</td><td>※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법정자본금</td><td>회사에 ~ 자본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 간주</td></tr></table></td></tr>
<tr><td>p.219</td><td>• 협동조합연합회가 ~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 가능</td><td>p.220</td><td>• 협동조합연합회가 ~ 회원에게 잉여금 배당 가능</td></tr>
<tr><td>p.219
p.109</td><td>· 잉여금의 배당은 총회나 이사회의 필수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되, 모든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약에 일부를 정할 수 있음

<추가></td><td>p.221</td><td>· 잉여금의 배당은 총회나 이사회의 필수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되, 모든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약에 일부를 정할 수 있음

※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의 승인은 총회 의결사항임에 유의</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222	• 자율경경공시 대상 연합회에 대해서는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고려해 시·도 사업 등 참여 시 정책적 지원 권고	p.224	•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연합회에 대해서는 시·도 사업 등 참여 시 우대를 고려할 수 있음
p.225 p.446 p.542	출자 및 자본 / 현물출자 / 현물출자의 대상은 ~~~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 첨부	p.227 p.450 p.546	출자 및 자본 / 현물출자 / 현물출자의 대상은 ~~~ 일시에 연합회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 첨부
p.229	④ 대차대조표 ~ 공고(법 제14조 제1항, 상법 제232조) <생략>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 ⅰ) 공고하거나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p.231	④ 대차대조표 ~ 공고(법 제14조 제1항, 상법 제232조) <현행과 같음>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 ⅰ) 공고하고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p.230	⑦ 합병등기(법 제65조) - 합병신고를 수리(신고수리 간주일 포함)한 날부터 ~ 등기	p.232	⑦ 합병등기(법 제65조) -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수리 간주일 포함)부터 ~ 등기
p.232	• 분할 후 신설.존속되는 연합회가 분할 전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의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승계(법 제56조 제3항)	p.234	• 분할 후 신설·존속되는 연합회가 분할 전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의 권리의무, 회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승계(법 제56조 제3항)
p.234	② 이사회 의결(제33조 제2호) - <생략> -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 의결	p.236	② 이사회 의결(제33조 제2호) - <현행과 같음> - 회원 총회의 소집 및 ~ 의결
p.235	- 연합회는 각 총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공고하거나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p.237	- 연합회는 각 총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 공고하고,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p.235	⑥ 신고수리 여부 통지(법 제56조 제4항, 제15조 제2항,	p.237	⑥ 신고수리 여부 통지(법 제56조 제4항, 제15조 제2항,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제15조의2) - <생략> * <생략> - <추가>		제15조의2)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연장.재연장 기간 포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한 것으로 봄
p.237	해산 사유(법 제57조 제1항) • <생략> •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 의결) • <생략>	p.239	해산 사유(법 제57조 제1항) • <현행과 같음> • 총회의 의결(총 회원 과반수의 ~ 의결) • <현행과 같음>
p.238	② 해산신고(법 제5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 <생략> - 기획재정부는 ~ 확인(「전자정부법」 ~ 제외) → 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 확인	p.240	② 해산신고(법 제5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 <현행과 같음> - 기획재정부는 ~ 확인(「전자정부법」 ~ 제외) →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등기를 한 후 ~ 확인
p.245	법 제66조(해산등기) 제66조(해산등기) ①협동조합이해산한 경우에는 ~	p.247	법 제66조(해산등기) 제66조(해산등기) ①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
p.246	• 첨부서류 - 청산인이 ~ (공증필요) - 청산인의 ~ 서류(위 회원총회에서 ~ 그 정관)를 첨부하여 신청	p.248	• 첨부서류 - 청산인이 ~ (공증필요) - 청산인의 ~ 서류(위 회원총회에서 ~ 그 정관)
p.251	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p.253	10. 공익법인등 지정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252	설립현황 •'19.12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1,710개가 설립인가되어 전체 협동조합(16,895개) 중 약 10.2%를 차지	p.254	설립현황 •'20.12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2,565개가 설립인가되어 전체 협동조합(19,388개) 중 약 13.2%를 차지
p.256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생략> ②<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 발급해야 한다.	p.257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 발급해야 한다.
p.259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 발급해야 한다. - 60일 이내에 ~ 그 기간이 끝난 날(6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다음날에 ~ 봄(법 제85조제5항)	p.261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 발급해야 한다. - 60일 이내에 ~ 그 기간(6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 봄(법 제85조제5항)
p.260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발기인대표로부터 ~ 납입하게 함(법 제87조제2항)	p.262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발기인으로부터 ~ 납입하게 함(법 제87조제2항)
p.261	11. 사업자 등록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	p.263	11. 사업자 등록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 가능
p.263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해당 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p.265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p.264	1. 설립인가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제출 - <생략>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신청인이 되어야 하므로 발기인 또는 설립동의자 중 1인이 설립신고인이 됨 ※ 행정사는 설립신고인이 될 수 없음	p.266	1. 설립인가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 <현행과 같음>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신청인이 되어야 하므로 발기인이 설립신청인이 됨 ※ 행정사는 설립신청인이 될 수 없음
p.264	2. 정관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예시'를 참고하되, 해당 협동조합	p.266	2. 정관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예시'를 참고하되,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고유의 ~ 작성		고유의 ~ 작성
p.265	<생략> - 사업내용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 않아야 함	p.267	<현행과 같음> - 사업내용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 ~ 않아야 함
p.265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 한다. <이하 생략>	p.267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 하려는 자는 다음 ~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p.266	4. 창립총회 의사록 • 주요 확인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이하 생략>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등기소에는 ~ 경우도 있음 <이하 생략>	p.268	4. 창립총회 의사록 • 주요 확인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제1항부터 제3항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이하 현행과 같음>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등기소에는 ~ 경우도 있음(지역등기소에 확인 필요) <이하 현행과 같음>
p.269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주요 확인사항 <생략> - 법 제101조제1, 2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p.271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주요 확인사항 <현행과 같음> -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273</td><td>
<table>
<tr><th>구분</th><th>사회적협동조합</th><th>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th></tr>
<tr><td>최저
출자금</td><td>제한 없음</td><td>1억원</td></tr>
<tr><td>이용공급고 산정</td><td>기준 없음</td><td>매출액 또는 이용인원</td></tr>
<tr><td>비조합원
이용</td><td>제한 없음(예외 있음)</td><td>총 공급고의 50% 이내</td></tr>
</table>
</td><td>p.273</td><td>
<table>
<tr><th>구분</th><th>사회적협동조합</th><th>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th></tr>
<tr><td>최저
출자금</td><td>제한 없음</td><td>1억원 이상 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이상</td></tr>
<tr><td>이용공급량 산정</td><td>기준 없음</td><td>매출액 또는 이용인원</td></tr>
<tr><td>비조합원
이용</td><td>제한 없음(예외 있음)</td><td>총공급량의 50% 이내</td></tr>
</table>
</td></tr>
<tr><td>p.273</td><td>
<table>
<tr><th>구분</th><th>제출서류</th><th>비고</th></tr>
<tr><td>3</td><td>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수입·지출예산서</td><td>사업계획이 ~ 해당</td></tr>
</table>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 전 사회적협동조합도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정관변경
</td><td>p.275</td><td>
<table>
<tr><th>구분</th><th>제출서류</th><th>비고</th></tr>
<tr><td>3</td><td>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td><td>사업계획이 ~ 해당</td></tr>
</table>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 전 사회적협동조합도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정관변경(상업등기 선례 제1-341호 참고)
</td></tr>
<tr><td>p.274
p.406</td><td>- 10일 이내에 ~ 그 기간이 끝난 날(1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다음날에 ~ 봄(법 제86조제5항)</td><td>p.276
p.410</td><td>- 10일 이내에 ~ 그 기간(1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 봄(법 제86조제5항)</td></tr>
<tr><td>p.276</td><td>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및 제26조(겸직허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생략>
제26조(겸직허가) <생략>
<추가></td><td>p.278</td><td>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및 제26조(겸직허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26조(겸직 허가)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11조(겸직허가)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p.276	• (공공기관 상임임원 및 직원) <생략> - 다만,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	p.278	• (공공기관 상임임원 및 직원) <현행과 같음> - 다만, ~~~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
p.277	나. 출자 및 책임 법 제86조(정관) 및 제22조(출자 및 책임) 준용 제86조(정관) ② 제1항제5호에 ~ 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생략>	p.279	나. 출자 및 책임 출자 및 책임 관련 법령 제86조(정관) ② 제1항제5호에 ~ 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현행과 같음>
p.278	출자금의 사용 • 출자금은 사업운영 ~ 금지	p.280	출자금의 사용 • 출자금은 사업운영 ~ 금지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 임직원 ~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 벌금에 처함(병과 가능)(법 제117조제1항)		- 임직원 ~ 투기를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을 ~ 벌금에 처함(병과 가능)(법 제117조제1항)
p.284 외* *p.88, 194, 414, 507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생략> ※ 다만, 총회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는 불가	p.287외* *p.90, p.196, p.418, p.511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생략> ※ 다만, 총회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는 불가
p.286	• 조합원 수가 ~ 가능(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란 ~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p.289	조합원 수가 ~ 가능(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란 ~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p.288	•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감사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둔 법 제34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함	p.291	<삭제> • 사회적협동조합은 감사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둔 법 제34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함
p.295	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준용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생략> 1. ~ 2.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a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p.298	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준용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2.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 ④ <현행과 같음>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299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판단방법(해당 ~ 택일)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 이상일 것	p.302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판단방법(해당 ~ 택일)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 이상일 것
p.300	시행규칙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 말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생략> ②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 ~ 5. <생략> 6.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p.303	시행규칙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 말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현행과 같음> ②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p.303	• "취약계층"이라 ~ 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 한다.	p.306	• "취약계층"이라 ~ 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 한다.
p.307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p.310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 청소년 ☞ 확인 방법: 가족관계 ~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이하 생략> * 채용당시 <이하 생략>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 청소년 ☞ 확인 방법: 가족관계 ~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이하 현행과 같음> ※ 채용당시 <이하 현행과 같음>
p.307	카.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발급 중)	p.310	카.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발급 중)
p.308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 타당하게 시행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이 불가능 ~ 우선 확인	p.311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 타당하게 시행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이 불가능 ~ 우선 확인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311	소액대출 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 정하되 - 소액대출이자율의 ~ 고려 - 연체이자율의 ~ 최고이자율(연 24%)을 넘을 수 없음	p.314	소액대출 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 정하되 - 소액대출이자율의 ~ 고려 - 연체이자율의 ~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을 수 없음
p.313 p.522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 시행령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에도 ~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 있다.	p.316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 시행령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 있다.
p.314 p.522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 시행령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생략>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p.316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 시행령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량의 산정기준은 ~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량을 산정한다.
p.314	• 다음 어느 하나에 ~ 할 수 없음 <생략> - 그 밖의 ~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 가능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조합원이 아닌 자"의	p.317	• 다음 어느 하나에 ~ 할 수 없음 <현행과 같음> - 그 밖의 ~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 가능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범위 1. ~ 3. <생략>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1. ~ 3. <현행과 같음>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p.315	•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 기준 적용	p.318	• 총공급량의 산정기준은 ~ 기준 적용
p.315	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생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 촉진 *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의료원	p.318	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 촉진 *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의료원
p.315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촉진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 체결 가능	p.318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촉진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은 1억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 체결 가능
p.316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9.3.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8.7.24.)	p.319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21.7.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21.2.2.)
p.316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용역 입찰 시 신인도 가점	p.319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용역 입찰 시 신인도 가점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
<table>
<tr><th>근거</th><th>구분</th><th>심사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r>
<tr><td>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7.10.)</td><td>신인도 평가기준</td><td>정책지원</td><td>부처별 정책지원</td><td>2.0</td></tr>
<tr><td>지방자체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17.12.)</td><td>신인도</td><td>기타</td><td>여성기업 등</td><td>1.0</td></tr>
</table>
</td><td></td><td>
<table>
<tr><th>근거</th><th>구분</th><th>심사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r>
<tr><td>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21.1.7.)</td><td>신인도 평가기준</td><td>정책지원</td><td>부처별 정책지원</td><td>2.0</td></tr>
<tr><td>지방자체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21.9.30.)</td><td>신인도</td><td>기타</td><td>여성기업 등</td><td>1.0</td></tr>
</table>
</td></tr>
<tr><td>p.321</td><td>※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법정자본금</td><td>회사에 돈을 ~ 협동조합의 경우 ~ 간주</td></tr>
</table>
</td><td>p.324</td><td>※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법정자본금</td><td>회사에 돈을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간주</td></tr>
</table>
</td></tr>
<tr><td>p.323
p.439</td><td>• 결산보고서의 종류
- 사업결산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td><td>p.326
p.443</td><td>• 결산보고서의 종류
- 사업결산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td></tr>
<tr><td>p.324</td><td>•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 함</td><td>p.327</td><td>•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 함</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325~
326</td><td>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사업결산 보고서</td><td>• 시행규칙 ~ 서식
• 직전 ~ 작성
• 수입과 ~ 작성
※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없음</td></tr>
<tr><td>사업결과 보고서</td><td>• 시행규칙 ~ 서식
• 해당연도 ~ 기재
<추가></td></tr>
</table>
</td><td>p.329</td><td>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사업결산 보고서</td><td>• 시행규칙 ~ 서식
• 직전 ~ 작성
• 수입과 ~ 작성
※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없음</td></tr>
<tr><td>사업결과 보고서</td><td>• 시행규칙 ~ 서식
• 해당연도 ~ 기재
※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없음</td></tr>
</table>
</td></tr>
<tr><td>p.329</td><td>참고2. 경영공시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예)
<table>
<tr><th>검토내용</th><th>서식</th><th>확인사항</th></tr>
<tr><td>과태료
해당 여부</td><td>해당 없음</td><td>(사회적협동조합 해당 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사업한도, 이자율, 범위 등을 초과하게 운영

<생략></td></tr>
</table>
</td><td>p.332</td><td>참고2. 경영공시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예)
<table>
<tr><th>검토내용</th><th>서식</th><th>확인사항</th></tr>
<tr><td>과태료
해당 여부</td><td>해당 없음</td><td>(사회적협동조합 해당 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운영
<현행과 같음></td></tr>
</table>
</td></tr>
<tr><td>p.333</td><td>•신설합병
<table>
<tr><td>해산등기</td><td>해산등기</td><td>설립등기</td><td>·합병 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td></tr>
</table>
</td><td>p.336</td><td>•신설합병
<table>
<tr><td>해산등기</td><td>해산등기</td><td>설립등기</td><td>·합병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설립등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에 따름)</td></tr>
</table>
</td></tr>
<tr><td>p.334</td><td>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td><td>p.337</td><td>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334p.
450</td><td>⑦ 합병등기(법 제107조)
-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td><td>p.337
p.454</td><td>⑦ 합병등기(법 제107조)
- 합병인가를 받은 날(인가 간주일 포함)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설립등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에 따름)</td></tr>
<tr><td>p.337</td><td>타법인 흡수합병 절차<table><tr><th colspan="2">소멸회사</th></tr><tr><td>총회
의결</td><td>•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총 조합원 ~ 이상의 찬성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출석, 출석주주 2/3이상의 찬성
• (소멸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총사원 반수 이상, 총사원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
• (소멸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동의</td></tr></table></td><td>p.340</td><td>타법인 흡수합병 절차<table><tr><th colspan="2">소멸회사</th></tr><tr><td>총회
의결</td><td>•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총 조합원 ~ 이상의 찬성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 (소멸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결의
• (소멸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동의</td></tr></table></td></tr>
<tr><td>p.340</td><td>⑥ 인가신청(법 제101조 제7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td><td>p.343</td><td>⑥ 인가신청(법 제101조 제7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2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td></tr>
<tr><td>p.340</td><td>⑦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td><td>p.343</td><td>⑦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제32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td></tr>
<tr><td>p.341~
342</td><td>•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table><tr><td>흡수합병 인가신청</td><td>• 기획재정부장관</td></tr></table>⬇</td><td>p.344~
345</td><td>•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table><tr><td>흡수합병 인가신청</td><td>•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342</td><td>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 공고(법 ~ 제54조)
<생략>
- 각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공고하거나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td><td>p.345</td><td>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 공고(법 ~ 제54조)
<현행과 같음>
- 각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 공고하고,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td></tr>
<tr><td>p.342</td><td>⑤ 인가 신청(법 제101조 제항, 시행규칙 제21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병인가 신청</td><td>p.345</td><td>⑤ 인가신청(법 제101조 제7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2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td></tr>
<tr><td>p.343</td><td>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td><td>p.346</td><td>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제32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td></tr>
<tr><td>p.343</td><td>⑧ 사업자등록
<table><tr><th>협동조합 유형</th><th>사업자등록</th></tr><tr><td>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td><td>폐업신고</td></tr></table></td><td>p.346</td><td>⑧ 사업자등록
<table><tr><th>협동조합 유형</th><th>사업자등록</th></tr><tr><td>소멸하는
협동조합</td><td>폐업신고</td></tr></table></td></tr>
<tr><td>p.346</td><td>• 소멸분할 절차
<table><tr><td>⬇</td><td>~~~</td></tr><tr><td>분할 인가신청</td><td>•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 의결 및 설립인가 신청</td></tr></table><table><tr><td>⬇</td><td>~~~</td></tr><tr><td>신설 사회적</td><td><추가></td></tr></table></td><td>p.349</td><td>• 소멸분할 절차
<table><tr><td>⬇</td><td>~~~</td></tr><tr><td>분할 인가신청</td><td>•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td></tr></table><table><tr><td>⬇</td><td>~~~</td></tr><tr><td>신설 사회적
협동조합</td><td>•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table><tr><td>협동조합</td><td></td></tr></table></td><td></td><td><table><tr><td></td><td>의결 및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에는 법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td></tr></table></td></tr>
<tr><td>p.347</td><td>• 존속분할 절차
<table><tr><td>⬇</td><td>~~~</td></tr><tr><td>분할 인가신청</td><td>•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td></tr></table>
<table><tr><td>⬇</td><td>~~~</td></tr><tr><td>신설 사회적 협동조합</td><td><추가></td></tr></table></td><td>p.350</td><td>• 존속분할 절차
<table><tr><td>⬇</td><td>~~~</td></tr><tr><td>분할 인가신청</td><td>•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td></tr></table>
<table><tr><td>⬇</td><td>~~~</td></tr><tr><td>신설 사회적 협동조합</td><td>•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 의결 및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에는 법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td></tr></table></td></tr>
<tr><td>p.348</td><td>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 공고(법 ~ 제54조)
<생략>
- 분할 사회적협동조합은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공고하거나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봄)</td><td>p.351</td><td>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 공고(법 ~ 제54조)
<현행과 같음>
- 분할 사회적협동조합은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 공고하고,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봄)</td></tr>
<tr><td>p.348</td><td>⑥ 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 분할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td><td>p.351</td><td>⑥ 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 분할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td></tr>
<tr><td>p.349</td><td>• 분할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td><td>p.352</td><td>• 분할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구분 | 첨부서류 5 | 임원명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약력 포함) 1부		구분 | 첨부서류 5 | 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p.350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102조(해산) ~ 시행규칙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 법 제110조(준용규정)	p.353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102조(해산) ~ 시행규칙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삭제> 법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 법 제110조(준용규정)
p.351	•"청산"이란 ~ 절차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 감독함(법 제103조 제5항)	p.354	•"청산"이란 ~ 절차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의 ~ 감독함(법 제103조 제5항, 제116조,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p.351	해산 절차 ⬇ | 재산상태조사,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 •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생략>	p.354	해산 절차 ⬇ | 재산상태조사,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 •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현행과 같음>
p.352	③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법 제108조, 제110조)	p.355	③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법 제108조, 제110조, 제67조)
p.353	⑦ 청산종결등기(법 제110조)	p.356	⑦ 청산종결등기(법 제110조, 제68조)
p.354	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357	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355</td><td>⑤ 청산종결 간주
- 해산 간주된 ~ 청산종결 등기</td><td>p.358</td><td>⑤ 청산종결 간주
- 해산 간주된 ~ 청산종결 등기(상업등기법 제73조)</td></tr>
<tr><td>p.358</td><td>시행령 제30조(조직변경 인가) ① 법 ~ 한다.
② <삭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 아니한다.
④ <삭제></td><td>p.361</td><td>시행령 제30조(조직변경 인가) ① 법 ~ 한다.
② 삭제<2020. 9.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 아니한다.
④ 삭제<2020. 9. 29.></td></tr>
<tr><td>p.358</td><td>※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비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규정하였던 부칙 규정의 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전환 대상이 아님</td><td>p.361</td><td><삭제></td></tr>
<tr><td>p.359</td><td><table><tr><th>구분</th><th>조직변경 시 결의사항</th></tr><tr><td>정관</td><td>협동조합의 목적, ~ 등</td></tr><tr><td>출자금</td><td>기존의 법인등의 ~ 협동조합의 출자금 ~ 못함</td></tr></table></td><td>p.362</td><td><table><tr><th>구분</th><th>조직변경 시 결의사항</th></tr><tr><td>정관</td><td>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 ~ 등</td></tr><tr><td>출자금</td><td>기존의 법인등의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 못함</td></tr></table></td></tr>
<tr><td>p.359</td><td>- (지분) 조합원 ~~~ 필요<table><tr><th>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th><th>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th><th>지분정리방법</th></tr><tr><td>조합원 ~ 이상</td><td>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76조</td><td>주식양도계약</td></tr><tr><td>질권 설정</td><td>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76조</td><td>피 담 보 채 무 상황</td></tr></table></td><td>p.362</td><td>- (지분) 조합원 ~~~ 필요<table><tr><th>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th><th>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th><th>지분정리방법</th></tr><tr><td>조합원 ~ 이상</td><td>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1조</td><td>주식양도계약</td></tr><tr><td>질권 설정</td><td>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1조</td><td>피 담 보 채 무 상황</td></tr></table></td></tr>
<tr><td>p.360</td><td>- (사내유보금)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총회의 ~ 있음(법 제105조의2 제5항)</td><td>p.363</td><td>- (사내유보금)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총회의 ~ 있음(법 제105조의2 제5항, 시행령 제29조)</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360	④ 조직변경인가신청일로부터 ~ 발급 - <추가> - 이 기간 내에 ~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 것으로 봄(법 제105조의2제9항, 10항)	p.363	④ 조직변경인가신청일로부터 ~ 발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60일 이내에 ~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 것으로 봄(법 제105조의2제9항, 제10항)
p.366	•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인가를 받은 날(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p.369	•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인가를 받은 날(합병을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p.368	•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 등기 •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과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그 의사록이나 정관에 청산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그 정관)를 첨부하여 신청	p.371	•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 등기 • 첨부서류 -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 -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그 의사록이나 정관에 청산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그 정관)
p.374	⑤ 결과조치 - 시정명령, 경고 -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등도 가능	p.377	⑤ 결과조치 -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설립인가 취소 등 감독에 따른 결과조치
p.374	설립인가 취소 관련 법령 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 한다.	p.377	설립인가 취소 관련 법령 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 한다.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1. ~ 4. <생략>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td><td></td><td>1. ~ 4. <현행과 같음>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td></tr>
<tr><td>p.375
p.474</td><td>설립인가 취소 사유
<table><tr><th>구분</th><th>취소사유</th></tr><tr><td>재량사항</td><td>정당한 사유 없이 ~ 주 사업을 개시하지 ~ 경우
<중략>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 경우</td></tr></table></td><td>p.378</td><td>설립인가 취소 사유
<table><tr><th>구분</th><th>취소사유</th></tr><tr><td>재량사항</td><td>정당한 사유 없이 ~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 경우
<현행과 같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 경우</td></tr></table></td></tr>
<tr><td>p.378</td><td>참고 2 관리 감독 일반 절차
계획 수립
• 근거 : 기본법 제70조의2(감독),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3(준용규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7조(벌칙), 제119조(과태료) 등</td><td>p.381</td><td>참고 2 관리 감독 일반 절차
계획 수립
• 근거 : 기본법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7조(벌칙), 제119조(과태료) 등</td></tr>
<tr><td>p.379</td><td>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td><td>p.382</td><td>10. 공익법인등 지정</td></tr>
<tr><td>p.379</td><td>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21.1.1.시행, '20.2.11.개정)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td><td>p.382</td><td>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21.9.10.시행, '21.8.31.개정)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 (일부생략)「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일부생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일부 생략)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일부 생략)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td><td></td><td>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td></tr>
<tr><td>p.379</td><td>· (대상)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지정기부금의 범위) ~</td><td>p.383</td><td>· (대상)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td></tr>
<tr><td>p.379</td><td>"지정기부금"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4항)</td><td>p.383</td><td>"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td></tr>
<tr><td>p.379</td><td><table><tr><th>구분</th><th>추천요건</th></tr><tr><td>1</td><td>정관의 내용상 ~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td></tr></table></td><td>p.383</td><td><table><tr><th>구분</th><th>추천요건</th></tr><tr><td>1</td><td>정관의 내용상 ~ 수행하는 것일 것</td></tr></table></td></tr>
<tr><td>p.380</td><td><table><tr><td>5</td><td>제12항에 ~ 지났을 것</td></tr></table>※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2·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①의 요건 적용 배제</td><td>p.383</td><td><table><tr><td>5</td><td>제12항에 ~ 지났을 것</td></tr></table><삭제></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380</td><td>추천신청서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21.1.1.시행)
<table>
<tr><th>구분</th><th>제출서류</th><th>비고</th></tr>
<tr><td>1</td><td>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td><td></td></tr>
<tr><td>6</td><td>-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3년이 안된 경우)
(다만, 제출일 현재 ~ 제출)</td><td></td></tr>
<tr><td>8</td><td>법인대표자이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서식)</td><td>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td></tr>
<tr><td>9</td><td>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td><td>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td></tr>
</table></td><td>p.383</td><td>추천신청서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21.3.16.시행)
<table>
<tr><th>구분</th><th>제출서류</th><th>비고</th></tr>
<tr><td>1</td><td>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td><td></td></tr>
<tr><td>6</td><td>-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삭제>
(다만, 제출일 현재 ~ 제출)</td><td></td></tr>
<tr><td>8</td><td>법인대표자이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서식)</td><td>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td></tr>
<tr><td>9</td><td>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td><td>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만 제출</td></tr>
</table></td></tr>
<tr><td>p.381</td><td>② 국세청장은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추천기한 : 1.31./4.30./7.31./10.31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제출</td><td>p.384</td><td>② 국세청장은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익법인등 추천서(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삭제>
<삭제></td></tr>
<tr><td>p.381</td><td>지정기간</td><td>p.384</td><td>지정기간</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 지정기간 : 지정일이 ~ 3년간
- 다만 지정받은 ~ 6년간
* 연도 중에 ~ 인정
- (법인) 지출하는 ~ 인정
- (개인) 지출하는 ~ 인정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td><td></td><td>· 지정기간 : 지정일이 ~ 3년간
- 다만 지정받은 ~ 6년간
* 연도 중에 ~ 인정
<삭제>
<삭제>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td></tr>
<tr><td>p.381~
382</td><td>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table><tr><th>구분</th><th>의무사항</th></tr><tr><td>4</td><td>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이 경우,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td></tr><tr><td>5</td><td>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 사실이 없을 것</td></tr><tr><td>9</td><td>「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td></tr></table></td><td>p.384~
385</td><td>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table><tr><th>구분</th><th>의무사항</th></tr><tr><td>4</td><td>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이 경우,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 것으로 봄</td></tr><tr><td>5</td><td>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 사실이 없을 것</td></tr><tr><td>9</td><td>「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td></tr></table></td></tr>
<tr><td>p.382</td><td>① 지정 후 매년 ~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2)
② 기부금 ~ 발급</td><td>p.385</td><td>① 지정 후 매년 ~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② 기부금 ~ 발급</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③ 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④ 관할세무서장이 ~ 제출 ⑤ ②의 기부금 영수증 ~ 제출		③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기부금을 발급하는 법인은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금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제112조의2)
p.382	• 국세청장의 사후관리의무 - 보고기한까지 ~ 보고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 ~ 요구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 제출할 것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음	p.385	• 국세청장의 사후관리의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제7항) - 보고기한까지 ~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 ~ 요구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 제출할 것을 해당 공익법인등에 요구할 수 있음
p.38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p.385	공익법인등 지정취소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추징당한 경우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td><td></td><td>•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삭제></td></tr>
<tr><td>p.383</td><td>재지정
• 신청절차
- 신규신청 ~ 동일(공문에 ~ 표기)
•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 종료 후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table><tr><th>구분</th><th>재지정배제사유</th></tr><tr><td>:</td><td>:</td></tr></table></td><td>p.386</td><td>재지정
• 신청절차
- 신규신청 ~ 동일(공문에 ~ 표기)
• 재지정 배제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조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삭제></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384	참고 1 기부금단체 추천서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기부금단체 추천서	p.387	참고 1 공익법인등 추천서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공익법인등 추천서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홈페이지 주소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 · 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 · 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 ·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공익법인등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 ] 기타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또는 제39조제1항바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또는 국세청장) [직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 · 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 · 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 ·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7) 기타 : (1)부터 (6)까지에 속하지 않는 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386</td><td>• 법무부는 ~ 고시함
<추가></td><td>p.389</td><td>• 법무부는 ~ 고시함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관련 사항은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 내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공증'에서 확인 가능</td></tr>
<tr><td>p.387</td><td>참고 |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table><tr><td colspan="2">협동조합 신고(인가) 번호</td><td>사업자등록번호</td></tr><tr><td rowspan="3">주소</td><td>본사</td><td></td></tr><tr><td>제1사업장</td><td></td></tr><tr><td>제2사업장</td><td></td></tr></table></td><td>p.390</td><td>참고 |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table><tr><td colspan="2">사회적협동조합 인가번호</td><td>사업자등록번호</td></tr><tr><td rowspan="3">주소</td><td>주사무소</td><td></td></tr><tr><td>제1 지사무소</td><td></td></tr><tr><td>제2 지사무소</td><td></td></tr></table></td></tr>
<tr><td>p.389</td><td>10. 지정기부금 발행</td><td>p.393</td><td>10. 기부금영수증 발행</td></tr>
<tr><td>p.390</td><td>특징
<table><tr><td>사업</td><td>금융 및 보험업을 ~ ,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회재정부장관의 ~ 가능</td></tr><tr><td>감독</td><td>감독 및 ~ 규정 존재</td></tr></table></td><td>p.394</td><td>특징
<table><tr><td>사업</td><td>금융 및 보험업을 ~ , 상담·교육·훈련,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회재정부장관의 ~ 가능</td></tr><tr><td>감독</td><td>감독 및 ~ 규정 존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능</td></tr></table></td></tr>
<tr><td>p.390</td><td>설립현황
•'19.12월말 기준 19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받음</td><td>p.394</td><td>설립현황
•'20.12월말 기준 20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받음</td></tr>
<tr><td>p.392</td><td>4. 창립총회 공고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 공고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조합의 인터넷 ~ 공고</td><td>p.396</td><td>4. 창립총회 공고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 공고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연합회의 인터넷 ~ 공고</td></tr>
<tr><td>p.392</td><td>5. 창립총회 개최</td><td>p.397</td><td>5. 창립총회 개최</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창립총회의 의사는 ~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 찬성으로 의결</td><td></td><td>• 창립총회의 의사는 ~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 찬성으로 의결</td></tr>
<tr><td>p.393</td><td>6. 설립인가 신청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 ~~~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 각 호와 같다.</td><td>p.397</td><td>6. 설립인가 신청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 ~~~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제외한다)에서 ~ 각 호와 같다.</td></tr>
<tr><td>p.394</td><td>7. 설립인가증 발급
-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 그 기간이 끝난 날(6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다음날에 ~ 봄(법 제85조제5항)</td><td>p.398</td><td>7. 설립인가증 발급
-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 그 기간(6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 봄(법 제85조제5항)</td></tr>
<tr><td>p.395</td><td>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으면 ~ 인계(법 제87조 준용)</td><td>p.399</td><td>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 인계(법 제87조 준용)</td></tr>
<tr><td>p.395</td><td>9. 출자금 납입
• 회장이 발기인대표로부터 ~ 납입하게 함(법 제87조 준용)
<table><tr><td>법인등기 전</td><td>법인등기</td><td>법인명의 통장개설</td></tr><tr><td>회장 ~ 납입</td><td>회장 ~ 확인</td><td>법인 ~ 이체</td></tr></table>
- 회장 명의의 ~ 제출(설립인가 ~ 함)
- 현물출자자는 ~ 제출
• 연합회의 ~ 총액으로 함</td><td>p.399</td><td>9. 출자금 납입
• 회장이 발기인으로부터 ~ 납입하게 함(법 제87조 준용)
- 회장 명의의 ~ 제출(설립인가 ~ 함)
- 현물출자자는 ~ 제출
• 연합회의 ~ 총액으로 함
<table><tr><td>법인등기 전</td><td>법인등기</td><td>법인명의 통장개설</td></tr><tr><td>회장 ~ 납입</td><td>회장 ~ 확인</td><td>법인 ~ 이체</td></tr></table></td></tr>
<tr><td>p.396</td><td>11. 사업자 등록

•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td><td>p.400</td><td>11. 사업자 등록

•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td><td></td><td>※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 가능</td></tr>
<tr><td>p.401</td><td>4. 창립총회 의사록
• 주요 확인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이하 생략>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등기소에는 ~ 경우도 있음
<이하 생략></td><td>p.405</td><td>4. 창립총회 의사록
• 주요 확인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제1항부터 제3항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이하 현행과 같음>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등기소에는 ~ 경우도 있음(지역등기소에 확인 필요)
<이하 현행과 같음></td></tr>
<tr><td>p.403</td><td>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중략>
•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 법 제101조제1, 2항(합병 및 분할)에 따라 ~ 제출(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td><td>p.407</td><td>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중략>
•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하여야 ~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 제출(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td></tr>
<tr><td>p.404</td><td>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하 생략></td><td>p.407</td><td><삭제></td></tr>
<tr><td>p.406</td><td><table><tr><th>구분</th><th>제출서류</th><th>비고</th></tr><tr><td>4</td><td>대차대조표와 ~ 서류</td><td>출자 ~ 해당</td></tr></table>※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 전 사회적협동조합도</td><td>p.410</td><td><table><tr><th>구분</th><th>제출서류</th><th>비고</th></tr><tr><td>4</td><td>대차대조표와 ~ 서류</td><td>출자 ~ 해당</td></tr></table>※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 전 사회적협동조합도 정관변경에</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정관변경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정관변경(상업등기 선례 제1-341호 참고)
p.407	가. 자격 및 가입 법 제73조(회원의 자격) 준용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 한다. ② 연합회는 ~ 있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 없다. ② 협동조합은 ~ 있다.	p.411	가. 자격 및 가입 법 제73조(회원의 자격) 및 제21조(가입) 준용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 한다. ② 연합회는 ~ 있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 없다. ② 협동조합은 ~ 있다.
p.407	회원의 가입 • 기본법에 의해 ~ 가능 - 자연인,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종협동종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	p.411	회원의 가입 • 기본법에 의해 ~ 가능 - <삭제>
p.408	출자금의 납부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은 연합회에 입급해야할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분할 ~ 필요	p.412	출자금의 납부 • 출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분할 ~ 필요
p.412	출자금환급청구권 • 탈퇴 및 제명 회원은 ~ 가능 ※ 협동조합연합회는 ~ 표현하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 각 조합원의 지분 개념은 ~ 표현	p.416	출자금환급청구권 • 탈퇴 및 제명 회원은 ~ 가능 ※ 협동조합연합회는 ~ 표현하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 각 회원 지분 개념은 ~ 표현
p.412	사.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법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및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준용 제90조(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생략>	p.416	사.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법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및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준용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생략>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p.414 p.416	- 회장은 총회 개최 ~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 통지	p.418	- 회장은 총회 개최 ~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 통지
p.417	임원 법 제34조(임원) 및 제78조(임원) 준용	p.421	임원 법 제34조(임원)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78조(임원) 준용
p.419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 •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관여한 행위는 ~ 않음	p.423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 •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 않음
p.420	회장 및 이사의 직무 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준용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 집행한다. ② 이사는 ~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p.424	회장 및 이사의 직무 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준용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 집행한다. ② 이사는 ~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p.421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 - 회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	p.425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 -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
p.422	임직원의 겸직 관련 법령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생략> 시행령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 할 수 있다. <추가>	p.426	임직원의 겸직 관련 법령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 제4항 ~ 있다. <이하 생략>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 제4항 ~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
p.424	라. 선거운동의 제한 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준용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생략> 제115조(준용규정) ① (일부생략)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후단생략)	p.428	라. 선거운동의 제한 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준용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생략> 제115조(준용규정) ① (일부생략)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후단생략)
p.424	• 선거운동제한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 적용	p.428	• 선거운동제한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 적용
p.429	나. 사업의 이용 법 제81조(사업의 이용) 제81조(사업의 이용) <생략> <추가>	p.433	나. 사업의 이용 법 제81조(사업의 이용) 준용, 제115조제 2항 제81조(사업의 이용) <현행과 같음> 제115조(준용규정)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p.429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433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회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td><td></td><td>조합원은 이용 불가</td></tr>
<tr><td>p.429</td><td>다. 공제사업
시행규칙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준용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생략>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생략></td><td>p.433</td><td>다. 공제사업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및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준용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현행과 같음></td></tr>
<tr><td>p.430</td><td>"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 실시하는 사업</td><td>p.434</td><td>•"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 실시하는 사업</td></tr>
<tr><td>p.437</td><td>• 운영의 공개 사항
<생략>
③ 조합원 명부</td><td>p.441</td><td>• 운영의 공개 사항
<현행과 같음>
③ 회원 명부</td></tr>
<tr><td>p.438</td><td>※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법정자본금</td><td>회사에 ~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 간주</td></tr></table></td><td>p.442</td><td>※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법정자본금</td><td>회사에 ~ 자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 간주</td></tr></table></td></tr>
<tr><td>p.440</td><td>• 총회의 의결
-"출자 1좌의 금액은" ~ 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 회원조합 과반수의 ~ 의결</td><td>p.444</td><td>• 총회의 의결
-"출자 1좌의 금액은" ~ 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 회원 과반수의 ~ 의결</td></tr>
<tr><td>p.441</td><td>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생략>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 함</td><td>p.445</td><td>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현행과 같음>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합회는 ~ 함</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442</td><td><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사업결산 보고서</td><td>•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생략></td></tr><tr><td>사업결과 보고서</td><td>•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생략></td></tr></table></td><td>p.446</td><td><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사업결산 보고서</td><td>•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현행과 같음></td></tr><tr><td>사업결과 보고서</td><td>•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현행과 같음></td></tr></table></td></tr>
<tr><td>p.446</td><td>참고 2 | 경영공시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예)<table><tr><td rowspan="2">(공시의무) 사업결과 보고서</td><td rowspan="2">별지 제24호 서식</td><td>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실적관리 이행여부</td></tr><tr><td>(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의 인가기준(40%) 충족 여부</td></tr></table></td><td>p.450</td><td>참고 2 | 경영공시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예)<table><tr><td rowspan="2">(공시의무) 사업결과 보고서</td><td rowspan="2">별지 제24호의2 서식</td><td>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실적관리 이행 여부</td></tr><tr><td>주 사업의 인가기준(40%) 충족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목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td></tr></table></td></tr>
<tr><td>p.448</td><td>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생략>
• 합병 후 ~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의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 승계(법 제115조제3항, 제101조제3항)</td><td>p.452</td><td>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현행과 같음>
• 합병 후 ~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의 권리의무, 회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 승계(법 제115조제3항, 제101조제3항)</td></tr>
<tr><td>p.450</td><td>④ 대차대조표 ~ 공고(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 및 제54조)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 작성(단, 총회 ~ 가능)
- 대차대조표의 ~ 합병기일(총회 ~ 필요)
- 각 합병 예정 연합회들은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 공고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td><td>p.454</td><td>④ 대차대조표 ~ 공고(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 및 제54조)
- 각 합병 예정 연합회들의 각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 작성(단, 총회 ~ 가능)
- 대차대조표의 ~ 합병기일(총회 ~ 필요)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 ⅰ) 공고하고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td></tr>
<tr><td>p.450</td><td>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td><td>p.454</td><td>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생략>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td><td></td><td><현행과 같음>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td></tr>
<tr><td>p.451</td><td>합병 인가 서류
<table><tr><th>구분</th><th>첨부서류</th></tr><tr><td>5</td><td>합병 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td></tr><tr><td>7</td><td>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 1부</td></tr></table></td><td>p.455</td><td>합병 인가 서류
<table><tr><th>구분</th><th>첨부서류</th></tr><tr><td>5</td><td>합병 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1부</td></tr><tr><td>7</td><td>출자 1좌의 금액과 회원별로 ~ 1부</td></tr></table></td></tr>
<tr><td>p.451</td><td>나. 분할
분할 관련 법령
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 ② <생략>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합병 또는 분할로 (이하 생략)</td><td>p.455</td><td>나. 분할
분할 관련 법령
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이하 현행과 같음)</td></tr>
<tr><td>p.452</td><td>분할의 정의 및 유형, 효과
<생략>
• 분할 후 ~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의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 승계(법 제101조제3항)</td><td>p.456</td><td>분할의 정의 및 유형, 효과
<현행과 같음>
• 분할 후 ~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의 권리의무, 회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 승계(법 제115조제3항, 제101조제3항)</td></tr>
<tr><td>p.453</td><td><table><tr><td>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td><td>(이의신청 ×) 분할 ~ 봄
(이의신청 ○) 분할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변제 ~ 제공</td></tr></table></td><td>p.457</td><td><table><tr><td>대차대조표 작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공고 및 개별최고
⬇</td><td>(이의신청 ×) 분할 ~ 봄
(이의신청 ○) 분할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채무변제 ~ 제공</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p.454</td><td><table><tr><td>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td><td>(이의신청 ×) 분할 ~ 봄
(이의신청 ○) 분할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은 채무변제 ~ 제공</td></tr></table></td><td>p.458</td><td><table><tr><td>대차대조표 작성,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및 개별 최고
⬇</td><td>(이의신청 ×) 분할 ~ 봄
(이의신청 ○) 분할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채무변제 ~ 제공</td></tr></table></td></tr>
<tr><td>p.455</td><td>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 공고(법 ~ 제54조)
<생략>
- 분할 연합회는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봄)</td><td>p.459</td><td>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 공고(법 ~ 제54조)
<현행과 같음>
- 분할 연합회는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i) 공고하고, ii)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봄)</td></tr>
<tr><td>p.455</td><td>⑥ 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 분할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td><td>p.459</td><td>⑥ 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 분할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td></tr>
<tr><td>p.455</td><td>⑦ 해산등기(법 제108조), 변경등기(법 제110조, 제64조), 설립등기(법 제106조, 제109조)
-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증이 ~ 변경등기(법 제110조, 제64조)</td><td>p.459</td><td>⑦ 해산등기(법 제108조), 변경등기(법 제64조), 설립등기(법 제106조, 제109조)
-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증이 ~ 변경등기</td></tr>
<tr><td>p.456</td><td>분할 인가 서류<table><tr><th>구분</th><th>첨부서류</th></tr><tr><td>6</td><td>분할 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td></tr></table></td><td>p.460</td><td>분할 인가 서류<table><tr><th>구분</th><th>첨부서류</th></tr><tr><td>6</td><td>분할 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1부</td></tr></table></td></tr>
<tr><td>p.457</td><td>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생략></td><td>p.461</td><td>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현행과 같음></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 그에 따른다. ②~ ④ <생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 그에 따른다. ②~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p.457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102조(해산) ~ 시행규칙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 준용한다. <추가>	p.462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102조(해산) ~ 시행규칙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삭제> 법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 준용한다. 법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법 제115조(준용규정)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p.458	해산 사유 • 정관으로 ~ 발생 •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 의결) <이하 생략>	p.462	해산 사유 • 정관으로 ~ 발생 • 총회의 의결(총 회원 과반수의 ~ 의결) <이하 현행과 같음>
p.470	<추가> •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 명하게 할 수 있음 <추가>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 명하게 할 수 있음	p.474	시정조치 명령 •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 명하게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사 등의 요구 및 시정조치 명령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 명하게 할 수 있음
p.470	④ 감독결과보고서 작성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 , 소관부처는 해당 연합회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p.475	④ 감독결과보고서 작성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 ,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연합회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p.473	참고 2 I 관리 감독 일반 절차 계획 수립 • 근거 : 기본법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3(준용규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7조(벌칙), 제119조(과태료) 등	p.477	참고 2 I 관리 감독 일반 절차 계획 수립 • 근거 : 기본법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준용규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7조(벌칙), 제119조(과태료) 등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476	10. 지정기부금 발행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2호 4. 지정기부금의 범위 개정(법인세법시행령 ~ 다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 기부금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4항)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 지정기부금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지정기부금 범위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시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발행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사회서비스 또는 ~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p.480	10.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8호 4.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 ~ 다목) : (일부 생략) 2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 기부금' • "공익목적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 공익법인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8호)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회서비스 또는 ~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
p.476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지정기부금 발행요건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정기부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하 생략>	p.480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익목적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요건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공익목적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하 현행과 같음>
p.479	참고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p.483	참고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
<table>
<tr><td colspan="2">연합회 신고(인가) 번호</td><td>사업자등록번호</td></tr>
<tr><td rowspan="3">주소</td><td>본사</td><td></td></tr>
<tr><td>제1사업장</td><td></td></tr>
<tr><td>제2사업장</td><td></td></tr>
</table>
</td><td></td><td>
<table>
<tr><td colspan="2">연합회 신고(인가)번호</td><td>사업자등록번호</td></tr>
<tr><td rowspan="3">주소</td><td>주사무소</td><td></td></tr>
<tr><td>제1 지사무소</td><td></td></tr>
<tr><td>제2 지사무소</td><td></td></tr>
</table>
</td></tr>
<tr><td>p.482</td><td>특징
<table>
<tr><th>구분</th><th>이종협동조합연합회 주요특징</th></tr>
<tr><td>사업</td><td>금융 및 보험업을 ~ ,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회재정부장관의 ~ 가능</td></tr>
</table>
</td><td>p.486</td><td>특징
<table>
<tr><th>구분</th><th>이종협동조합연합회 주요특징</th></tr>
<tr><td>사업</td><td>금융 및 보험업을 ~ , 상담·교육·훈련,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회재정부장관의 ~ 가능</td></tr>
</table>
</td></tr>
<tr><td>p.483</td><td>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법 제115조의2(설립인가)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 ③ <생략>

<추가></td><td>p.487</td><td>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법 제115조의2(설립인가)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31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제31조의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31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31조의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p.486	• 설립인가신청서를 ~ 발급 - 기획재정부장관은 ~ 함 - 인가 여부 ~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 봄(기본법 제85조제5항 준용)	p.490	• 설립인가신청서를 ~ 발급 - 기획재정부장관은 ~ 함 -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 아니하면 그 기간(6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 봄(기본법 제85조제5항 준용)
p.487	9. 출자금 납입 <중략> - 현물출자자는 ~ 제출 <추가>	p.491	9. 출자금 납입 <현행과 같음> - 현물출자자는 ~ 제출 • 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p.487	10. 설립등기 법 제106조(설립등기) 준용) 제106조(설립등기) ① <생략> <추가>	p.491	10. 설립등기 법 제115조의3(준용규정), 제106조(설립등기) 준용 제106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td><td></td><td>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td></tr>
<tr><td>p.487</td><td>11. 사업자 등록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td><td>p.492</td><td>11. 사업자 등록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 가능</td></tr>
<tr><td>p.488</td><td><table><tr><th>구분</th><th>제출서류</th><th>비고</th></tr><tr><td>3</td><td>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td><td></td></tr></table></td><td>p.492</td><td><table><tr><th>구분</th><th>제출서류</th><th>비고</th></tr><tr><td>3</td><td>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td><td>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td></tr></table></td></tr>
<tr><td>p.492</td><td>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생략>
<추가></td><td>p.496</td><td>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td></tr>
<tr><td>p.493</td><td>4. 창립총회 의사록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준용</td><td>p.497</td><td>4. 창립총회 의사록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준용</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생략> <추가>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p.500	나. 출자 및 책임 법 제86조(정관) 및 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준용 제86조(정관) <생략>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 ④ <생략> ⑤ 회원의 책임은 ~ 한다. 제115조의5(준용규정) <생략>	p.504	나. 출자 및 책임 법 제86조(정관) 및 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준용 제86조(정관) <현행과 같음>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합원의 책임은 ~ 한다. 제115조의5(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p.503	마. 제명 법 제25조(제명) 준용 제25조(제명) ① <생략> ② 협동조합은 ~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507	마. 제명 법 제25조(제명) 준용 제25조(제명) ① <현행과 같음> ② 협동조합은 ~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505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준용 제27조(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생략>	p.509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준용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현행과 같음>
p.507 p.509	- 회장은 총회 개최 ~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 통지	p.511	- 회장은 총회 개최 ~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 통지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510	나. 임원 법 제34조(임원) 및 제78조(임원) 준용 제34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추가> 제78조(임원) <생략>	p.514	나. 임원 법 제34조(임원) 및 제78조(임원) 준용 제34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임원) <현행과 같음>
p.513	임원의 해임 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준용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 한다. <추가>	p.517	임원의 해임 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준용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 한다. 제115조의6(준용규정) (일부 생략)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후단 생략)
p.514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 - 회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	p.518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 -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
p.523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및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준용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 ④ <생략>	p.527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및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준용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추가>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① ~ ② <생략>
<추가>
④ ~ ⑧ <생략></td><td></td><td>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 ⑧ <현행과 같음></td></tr>
<tr><td>p.524</td><td>"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 실시하는 사업</td><td>p.528</td><td>•"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 실시하는 사업</td></tr>
<tr><td>p.533</td><td>※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법정자본금</td><td>회사에 ~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 간주</td></tr></table></td><td>p.537</td><td>※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법정자본금</td><td>회사에 ~ 자본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 간주</td></tr></table></td></tr>
<tr><td>p.534</td><td>잉여금의 배당((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준용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 배당할 수 있다.
<이하 생략></td><td>p.538</td><td>잉여금의 배당((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준용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 배당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td></tr>
<tr><td>p.539</td><td><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사업결산 보고서</td><td>•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생략></td></tr></table></td><td>p.543</td><td><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사업결산 보고서</td><td>•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현행과 같음></td></tr></table></td></tr>
<tr><td>p.542</td><td>참고 2 경영공시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예)</td><td>p.546</td><td>참고 2 경영공시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예)</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서식</th><th>확인사항</th></tr>
<tr><td>(공시 의무)
사업결산보고서</td><td>별지 제9호,
제23호 서식</td><td><생략></td></tr>
<tr><td>(공시 의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상황</td><td>별지 제10호
서식식</td><td><생략></td></tr>
<tr><td>(공시 의무)
사업결과보고서</td><td>별지 제11호,
제24호의2 서식</td><td>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실적 관리 이해여부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의 인가기준(40%) 충족 여부</td></tr>
</table>
</td><td></td><td>
<table>
<tr><th>구분</th><th>서식</th><th>확인사항</th></tr>
<tr><td>(공시 의무)
사업결산보고서</td><td>별지 제23호
서식</td><td><현행과 같음></td></tr>
<tr><td>(공시 의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상황</td><td>별지 제10호
서식</td><td><현행과 같음></td></tr>
<tr><td>(공시 의무)
사업결과보고서</td><td>별지 제24호의2
서식</td><td>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실적 관리 이해여부</td></tr>
</table>
</td></tr>
<tr><td>p.545</td><td>나. 해산 및 청산
해산 관련 법령 준용
<생략>
법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하 생략)</td><td>p.549</td><td>나. 해산 및 청산
해산 관련 법령 준용
<현행과 같음>
법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하 생략)</td></tr>
<tr><td>p.557</td><td>참고 1 | 등기 관련 준용사항
<table>
<tr><th colspan="2">「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h></tr>
<tr><td>제121조</td><td>다음 각 호의 어느 ~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td></tr>
</table></td><td>p.561</td><td>참고 1 | 등기 관련 준용사항
<table>
<tr><th colspan="2">「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th></tr>
<tr><td>제121조</td><td>다음 각 호의 어느 ~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td></tr>
</table></td></tr>
<tr><td>p.558</td><td>가. 감독
법 제111조(감독)</td><td>p.562</td><td>가. 감독
법 제111조(감독) 준용</td></tr>
<tr><td>p.559</td><td>•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 할 수 있음</td><td>p.563</td><td>•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 할 수 있음</td></tr>
<tr><td>p.562</td><td>참고 2 관리 감독 일반 절차
계획 수립
• 근거 : 기본법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td><td>p.566</td><td>참고 2 관리 감독 일반 절차
계획 수립
• 근거 : 기본법 제111조(감독),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기존(2021. 4월)</th><th>구분</th><th>개정(2022. 2월)</th></tr>
<tr><td></td><td>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3(준용규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7조(벌칙), 제119조(과태료) 등</td><td></td><td>제115조의13(준용규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7조(벌칙), 제119조(과태료) 등</td></tr>
<tr><td>p.565</td><td>참고 | 기존 연합회와의 비교<table><tr><td>구분</td><td>(일반)협동조합 연합회</td><td>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td><td>이종협동조합연합회</td></tr><tr><td>사업</td><td colspan="3">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 수행가능,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획재정부장관의 ~ 가능</td></tr><tr><td>사업의 이용</td><td>공제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도 사업이용 가능</td><td>회원인 조합의 ~ 이용한 것으로 봄(공제사업 제외)</td><td><추가></td></tr></table></td><td>p.569</td><td>참고 | 기존 연합회와의 비교<table><tr><td>구분</td><td>(일반)협동조합 연합회</td><td>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td><td>이종협동조합연합회</td></tr><tr><td>사업</td><td colspan="3">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 수행가능,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필수
기획재정부장관의 ~ 가능</td></tr><tr><td>사업의 이용</td><td>공제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도 사업이용 가능</td><td>회원인 조합의 ~ 이용한 것으로 봄(공제사업 제외)</td><td>공제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도 사업이용 가능</td></tr></table></td></tr>
<tr><td>p.568~569</td><td>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 위탁한다.
1. ~5. <생략>
6.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 11. <생략></td><td>p.572~573</td><td>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 위탁한다.
1.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 11. <현행과 같음></td></tr>
<tr><td>p.576</td><td>-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 경우</td><td>p.580</td><td>-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 경우</td></tr>
<tr><td>p.578</td><td>-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 경우(법 제37조제2항 위반)</td><td>p.582</td><td>-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경우(법 제37조제2항 위반)</td></tr>
</table>

구분	기존(2021. 4월)	구분	개정(2022. 2월)
p.579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 사용(법 제3조제2항 위반)	p.583	-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 사용(법 제3조제2항 위반)
p.580	- 허용된 비조합원 ~ 한 경우(법 제46조 위반)	p.584	- 허용된 비조합원 ~ 한 경우(법 제46조, 제81조, 제95조 위반)
p.580	-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49조, 제49조의2, 제96조의2 위반)	p.584	-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49조, 제49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위반)
p.586~644	협동조합법령	p.590~p632	2021. 1. 5.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2021. 1. 5.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으로 교체
p.668~66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 (2) 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p.67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 (2) 유형자산 - 차량운반기구
p.69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 (2) 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p.697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 (2) 유형자산 - 차량운반기구
p.701	<추가>	p.706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